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합534553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17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합534553 판결

전 문

원고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5. 4. 24.

판결 선고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76,255원 및 그 중 195,790,566원에 대하여는 2013. 3. 5.부터, 334,085,689원에 대하여는 2013. 6. 11.부터 각 2015.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19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부다비 폴리머스 컴퍼니(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UAE 석유화학단지 부대시설 공사(공사명 UAE Borouge 3 Project)를 수주한 후, 2010. 6. 30.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이라 한다)에 위 공사의 상세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2. 계약기간 : 2011. 2. 21. ~ 2014. 3. 15.

3. 계약금액 : 미화 4,754,0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

첨부 #1. 용역계약조건

제2조(휴먼텍의 용역 수행)

(1) 확정분 : 휴먼텍은 원고에게 본계약의 기술 용역을 첨부 #2 및 첨부 #3에 의거 제공함에 있어서 본사 설계 용역은 "확정분 금액"으로 수행한다.

(2) 정산분 : 원고의 요청에 따라 휴먼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내외 출장 및 현장 파견 용역과 본계약에 의한 추가업무 등은 실비 정산하여 본 확정분 금액에 가감한다. 인력의 실비정산 적용단가는 첨부 #3 용역비 산출 내역에 명시된 용역지원단가에 따른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휴먼텍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의 제공을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휴먼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첨부 #2 용역범위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기본 업무 외에 원고가 제6조에 의거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용역계약의 변경)

(1) 원고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휴먼텍에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 공정 계획의 변경

(3) 용역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휴먼텍은 해당 Man Month를 산출한 후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하고 변경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동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조(용역대가의 산정)

(1) 확정분 설계용역 대가

쌍방 합의된 공정 진도율 산출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정산분 설계용역 대가

1) 직접 인건비 및 제 경비

다)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휴먼텍의 직원이 국내 또는 해외 출장 및 파견시 첨부 #6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산정한다.

제10조(용역대가 지급방법)

(1) 원고는 본 용역계약이 서명되고 휴먼텍의 선급금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휴먼텍에 지급하며, 선급금 신청시 휴먼텍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정분 계약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은 별도로 합의된 공정 진도율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용역대가를 선수금 반제 후 매월 지급한다. 정산분 용역대가의 지급은 합의된 Man

Month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첨부 #3 용역비 산출 내역

1. 확정분[본사설계비, 전문설계비, IT(HW/SW)]: 3,519,535달러
2. 정산분(Field Engineering, Pre-Commissioning 지원, Commissioning & Start-up 지원):
 $99\text{MM} \times \text{Unit Price } 12,476\text{달러/MM} = 1,235,124\text{달러}$
3. 합계 : 4,754,659달러
4. 적용 : 4,754,000달러

○ 정산조건

2) 정산단가(1인 1개월 기준)

- 급여, 현장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현장 부임/철수 항공운임 포함
- 정산적용단가 : 12,476달러/MM

3) 해외 출장비 및 현장 잔업근무비는 정산 조건(첨부 정산항목 세부 적용기준 참조)

첨부 #6 정산항목 세부 적용기준

1. 해외 출장비 지급기준

- 항공료, 숙박비 : 실비정산
- 일당, 기타 잡비(현지 체류기간에 한함) : 직원 100달러/일

2. 현장 잔업근무비

3. 휴가비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2010. 12. 30. 3D Modeling 관련 Software 구입 및 추가 인원동원으로 114,495달러가 추가되었고(이하 '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2012. 10. 12. 발주처 Variation Order로 인한 추가 설계 역무로 1,300,000달러가 추가되었다(이하 '2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다. 휴먼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액의 15%인 713,100달러의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한도로 휴먼텍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휴먼텍은 피고로부터 당초 계약금액

및 추가된 계약금액의 각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한도로 휴먼텍의 원고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가 발급한 보증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선급금보증	2011. 7. 1.	713,100.00	2011. 7. 1. ~ 2014. 3. 15.
계약보증	2011. 7. 1.	237,700.00	2011. 2. 21. ~ 2014. 3. 15.
2012. 6. 4.	5,274.75	2011. 12. 30. ~ 2014. 3. 15.	
2012. 10. 12.	65,000.00	2012. 10. 12. ~ 2014. 3. 15.	
소계	308,424.75		

라. 휴먼텍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매월 기성금액을 산정한 후 선급금에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휴먼텍이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중단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휴먼텍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와 휴먼텍이 합의한 이 사건 용역의 기성률은 89.6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급금반환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확정분과 정산분 용역의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충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선급금 잔액은 218,744달러이므로,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8,744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출장비, ②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액, ③ 배관설계 외주비, ④ 최종 기성검사 후 타절 기성검사까지의 기성금액도 선급금에서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남아 있지 않거나 16,505달러만 남아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 지급 후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등 참조).

2) 출장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출장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선급금은 확정분 3,519,535달러와 정산분 1,235,124달러로 구성된 계약금액 4,754,000달러(1,000달러 미만 절삭)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확정분 대금은 본사설계비, 전문설계비, IT(HW/SW) 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다. 정산분 대금은 Field Engineering, Pre-Commissioning 지원, Commissioning & Start-up 지원에 소요되는 급여, 현장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현장 부임·철수 항공운임을 포함한 인건비로서 Man Month(이하 'MM'이라 한다)당 12,476달러를 적용하여 99MM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②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확정분과 정산분 용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금액은 위 확정분과 정산분 용역의 수행에 따른 기성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출장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산정한 확정분 대금은 물론 정산분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수주 공사의 설계용역의 특성상 출장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출장비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확정분과 정산분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된 이 사건 선급금의 목적에 반한다.

3)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액, 배관설계 외주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2, 3, 5 내지 7호증, 23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액과 배관설계 외주비는 이 사건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①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추가 업무의 수행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점(제6조), ㉡ 1, 2차 추가계약은 기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계약금액을 '추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에 의한다'고 정한 점, ㉢ 휴먼텍은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보증분에 대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 보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 원고가 휴먼텍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과 1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추가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용역업무를 추가한 변경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러나 계약금액의 15%인 이 사건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되는 기성금액은 계약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확정분과 정산분 용역의 수행에 따른 것인데,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액은 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2차 추가계약에 따른 기성금액 중 일부인 배관설계 외주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③ 1, 2차 추가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증액된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계약보증서가 각 발급되었으나, 증액된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되거나 이를 한도로 한 선급금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는 1, 2차 추가계약의 전체 대금이 한 번에 지급된 점과 제2차 추가계약 중 일부가 외주 업체에 직불 형식으로 맡겨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선급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이 1, 2차 추가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최종 기성검사 후 타절 기성검사까지의 기성금액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9호증의 2, 23호증의 16,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최종 기성검사 후 타절 기성검사까지의 기성금액은 이 사건 선급금의 총당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의 타절 전인 2012. 10. 19. 이루어진 최종 기성검사 당시 기성율은 88.89%이고, 타절 기성검사 당시 기성률은 89.66%로서, 최종 기성검사 후 타절 기성검사 당시까지 용역이 0.77% 더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5.까지 최종 기성검사 당시의 기성율에 대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된 0.77%에 대한 기성금액 37,992달러[= (확정분 계약금액 3,134,535달러 + 1차 추가계약금액 114,495달러 + 2차 추가계약금액 1,300,000달러) × 0.77%, 달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는 미지급 기성금으로 남아 있다.

② 1, 2차 추가계약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위 추가 기성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선급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확정분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5) 선급금 잔액의 계산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0조는 기성금액이 선급금에 총당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총당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급금 지급의 목적, 휴먼텍이 원고에게 기성금액을 청구하면서 선급금에 총당하는 금액을 거래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선급금 × 기성금액 / 계약금액'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원고도 이에 따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도 선급금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총당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휴먼텍의 1차 기성금액 내지 16차(최종) 기성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선급금에 총당되어 최종 기성검사 당시 선급금 잔액은 218,744달러가 된다.

나) 한편, 최종 기성검사 후 타절 기성검사까지의 기성금액 37,992달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급금의 목적이 고려될 필요가 없으므로, 미지급된 기성금 전액이 선급금에 총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발급한 선급보증서의 약관 제3조에서도 "조합이 이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가 계약이행기일 이내에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해당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지급 기성금 37,992달러는 최종 기성검사 당시 선급금 잔액 218,744달러에 전액 충당되므로, 선급금 잔액은 180,752달러(= 218,744달러 - 37,992달러)가 된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4,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급금보증약관 제8조에서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2. 12. 14. 휴먼텍과 타절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타절 기성검사 내역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액과 선급금의 총당 액수 및 미지급 기성금의 존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3. 2. 14.경 피고에게 휴먼텍과 정산한 타절기성 검사내역을 기초로 미지급 정산금이 없음을 설명한 후 2013. 2. 22.(금요일) 이 사건 선급금 잔액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2013. 2. 25.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2. 12. 14. 이후 원고로부터 타절 기성검사 내역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공받음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2. 22.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2013. 2. 25.에는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3. 5.부터 이 사건 선급금 잔액 상당의 선급금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790,566원(= 180,752달러 × 변론 종결일 매매기준율 1,083.20원/달러,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3.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본 공사의 지연으로 발주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4,265,160달러, ㉡ 상세설계 지연으로 추가된 간접비 4,232,575,887달러,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다른 업체와 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된 계약금액 5,196,530.38달러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범위 안에 있는 계약이행보증금 308,424.75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약관 제3조는 "㉠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실제 손해액에서 제외되는 '지체상금'은 보증채권자와 보증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을 의미하고, 보증채무자의 하도급공사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도급공사가 지체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원도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이 보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발주처에 원고 주장의 지체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접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갑 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4. 3.부터 2014. 11.까지 현장 직원들에게 지출된 급여 상당의 간접비 4,070,254.15달러가 휴먼텍의 계약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후속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0,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원고가 지출한 추가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308,424.75달러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08,424.75달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 2013. 1. 9.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잔여 공사에 관하여 확정분 3,958,500,000원(당시 매매기준율인 1,052.20달러/원에 의할 경우 3,762,117달러) 상당의 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타절 당시 잔여 계약금액은 1,484,854달러(= 추가계약 포함 총 계약금액 6,168,495달러 - 선급금 포함 휴먼텍에 지급된 기성금액 4,683,641달러)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직후 체결된 후속계약의 확정분 대금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잔여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2,277,263달러로서, 계약보증금 308,424.75달러의 7배를 넘는다.

② 원고와 휴먼텍 사이에 기성으로 인정된 용역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5. 위 후속계약의 계약금액에 정산분 1,236,321,454원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계약의 계약금액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③ 공사중단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한 후속 공사계약은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약이행보증약관 제9조는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2. 12. 14. 휴먼텍과 타절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타절

기성검사 내역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금액과 선급금의 총당 액수 및 미지급 기성금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2013. 2. 22.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도 손해 관련 입증자료는 후속 계약이행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제출 예정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그 이후 2013. 2. 25., 2013. 3. 4., 2013. 5. 7.에도 피고에게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이행 촉구 문서, 선급금 반환 요청 문서, 계약해지 문서 및 주채무자 계약포기각서 등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대응한 사실에 비추어, 손해 관련 입증자료는 후속 내용증명을 통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 5. 31.(금요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2013. 6. 3.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2013. 2. 22.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받고 그 이후 손해 관련 입증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5. 31. 발송된 내용증명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2013. 6. 3.에는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6. 11.부터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085,689원(= 308,424.75달러 × 변론 종결일 매매기준율 1,083.20원/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6.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 195,790,566원과 계약이행보증금 334,085,689원을 합산한 529,876,255원 및 그 중 195,790,566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5.부터, 334,085,68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경민

판사이보경

별지